

선 람	기 관 의 장

제1026호 2018. 7. 6.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7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82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 9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524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12
- 삼척시 공고 제525호 삼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5
- 삼척시 공고 제535호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1
- 삼척시 공고 제537호 분할개시결정 공고 ----- 27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삼척시 고시 제 2018-7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6일
삼척시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1) 도로

1)도로결정(변경)조서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km)
기정	시도	중로1-5	중로1-5	자원동49-6	45,297	대로 3-6 읍중동 2-5도	대로 3-6 자원동 49-6도	-	2.157
변경	시도	중로1-5	중로1-5	자원동207	42,756	대로 3-6 읍중동 2-5	광장 A 자원동 207	엑스포 광장	2.036
폐지	시도	중로3-6	중로3-6	자원동35-1	893㎡	대로 3-6 자원동 28-2도	중로 1-5 자원동 35-1도	삼척중 동측	0.094

(2) 광장

1) 광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0	자원 광장	교통광장	자원동 36-1일원	-	중)10,605	10,605		대로3-6 호선과 중복결정 (L=224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1)도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1-5 호선	중로1-5 호선	○ 노선축소 - 연장 : 2,157m → 2,036m	· 건지~자원간 도로(교량) 개설사업 시행에 따른 시점부(노선변경) 및 연장 변경
중로3-6 호선	-	○ 폐지	· 건지~자원간 도로(교량) 개설사업 시행으로 신설된 교통광장으로 변경되어 시설 폐지

2)광장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	교통광장	○ 광장신설 - 위치: 자원동 36-1일원 - 면적: 10,605㎡	· 건지~자원 도로(교량) 개설사업에 따른 교차로 설치로 인한 신설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18.8.1.~2020.7.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또는 명칭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전세면적 (㎡)	권입면적 (㎡)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관계		
	합계			121,155.0	20,454.0							
1	삼척시 자원동	48-4	도	764.0	1.0	건설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	삼척시 자원동	48-10	도	7.0	1.0	삼척시	삼척시 중앙로 296					
3	삼척시 자원동	25-10	도	692.0	13.0	건설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4	삼척시 자원동	40	도	482.0	433.0	삼척시	삼척시 중앙로 296					
5	삼척시 자원동	50-7	도	2.0	2.0	건설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	삼척시 자원동	50-6	도	46.0	46.0	윤*구	남양동 10/*					
						윤*욱	성남동 17/*					
						삼척시	삼척시 중앙로 296					
7	삼척시 자원동	신8-4	도	787.0	7.0	삼척시	삼척시 중앙로 296					
8	삼척시 자원동	38-1	도	2,781.0	2,659.0	건설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9	삼척시 자원동	신8-3	도	406.0	278.0	건설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0	삼척시 자원동	신7-4	도	1,589.0	1,375.0	건설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1	삼척시 자원동	38-4	전	59.0	59.0	삼척시	삼척시 중앙로 296					
12	삼척시 자원동	신7-9	도	20.0	20.0	허*수	자원동 3*	삼척시	삼척시 중앙로 296	대위(이전등기청구권)		
						삼척시	삼척시 중앙로 296					
13	삼척시 자원동	신7-6	도	47.0	33.0	건설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4	삼척시 자원동	33-2	전	14.0	5.0	삼척시	삼척시 중앙로 296					
15	삼척시 자원동	33-4	도	187.0	37.0	건설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6	삼척시 자원동	33-9	도	75.0	30.0	삼척시	삼척시 중앙로 296					
17	삼척시 자원동	34-1	도	30.0	30.0	삼척시	삼척시 중앙로 296					
18	삼척시 자원동	34-5	도	50.0	50.0	미등기						
19	삼척시 자원동	28-2	도	1,506.0	1,049.0	건설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0	삼척시 자원동	신1-2	도	383.0	100.0	삼척시	삼척시 중앙로 296					
21	삼척시 자원동	신1-14	도	35.0	17.0	삼척시	삼척시 중앙로 296					
22	삼척시 자원동	신1-7	도	193.0	36.0	삼척시	삼척시 중앙로 296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또는 명칭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전세면적 (㎡)	권입면적 (㎡)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관계		
23	삼척시 자원동	신1-4	도	1,592.0	1,217.0	건설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4	삼척시 자원동	신1-15	도	756.0	87.0	삼척시	삼척시 중앙로 296					
25	삼척시 자원동	50-3	도	1,020.0	724.0	삼척시	삼척시 중앙로 296					
26	삼척시 자원동	49-6	도	23.0	23.0	건설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7	삼척시 자원동	50-2	도	137.0	137.0	건설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8	삼척시 자원동	50-1	전	142.0	142.0	윤*구	남양동 10/*					
						윤*욱	성남동 17/*					
						삼척시	삼척시 중앙로 296					
29	삼척시 자원동	39-3	대	157.0	157.0	이*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105, 2303동 204호(행신동, 햇빛마을)					
30	삼척시 자원동	39-2	도	23.0	23.0	김*갑	자원동 **	삼척**합동 조합	삼척시 남양동 34-1*	서울**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로구 연지동 136-7*	가입류
								국	삼척세무서			가입류
31	삼척시 자원동	39-4	전	289.0	289.0	이*희	자원동 37-*					
						이*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105, 2303동 ***호(행신동, 햇빛마을)					
32	삼척시 자원동	37-1	대	208.0	208.0	이*희	삼척시 자원동 37-*					
33	삼척시 자원동	37-2	도	139.0	139.0	이*황	부천시 남구 대연동 산191-*					
34	삼척시 자원동	38-3	전	489.0	489.0	김*천	삼척시 남양동 22-*	삼척시	삼척시 중앙로 296	대위(이전등기청구권)		
35	삼척시 자원동	36-1	묘	354.0	354.0	김*환	강원도삼척시 오십천로 217-*(자원동)					
36	삼척시 자원동	51-1	도	602.0	506.0	삼척시	삼척시 중앙로 296					
37	삼척시 자원동	35-1	도	592.0	592.0	삼척시	삼척시 중앙로 296					
38	삼척시 자원동	38-2	전	17.0	17.0	김*천	삼척읍 원당리 4-*					
39	삼척시 자원동	36-2	묘	139.0	139.0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40	삼척시 자원동	신7-5	임	200.0	200.0	허*수	자원동 3*	삼척시	삼척시 중앙로 296	대위(이전등기청구권)		
						윤*섭	동해시 동해동 442 대동현대아파트 2-2**					
						윤*한	포항시 남구 지곡동110 낙원아파트 8-110*					
						차*순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봉계리 310-*					
41	삼척시 자원동	신7-2	임	99.0	99.0	윤*섭	동해시 동해동 442 대동현대아파트 2-20*					
						윤*한	포항시 남구 지곡동110 낙원아파트 8-110*					
42	삼척시 자원동	25-4	도	498.0	283.0	건설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43	삼척시 자원동	34-6	대	192.0	192.0	지*수	강원도 삼척시 오사동 *					
44	삼척시 자원동	51-4	도	330.0	116.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삼척시	삼척시 중앙로 296					
45	삼척시 자원동	34-2	도	177.0	177.0	건설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46	삼척시 자원동	33-3	전	187.0	3.0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또는 명칭	토지소유자 주소	관계인			비고
				전체 면적 (㎡)	권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리 관계	
47	삼척시 자월동	34-4	도	159.0	39.0	미등기					
48	삼척시 자월동	207	천	20,807.0	2,205.0	건설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음6로 11				
49	삼척시 원당동	산50-15	도	1,883.0	122.0	삼척시	삼척시 중앙로 296				
50	삼척시 원당동	산49-4	도	1,810.0	180.0	건설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음6로 11				
51	삼척시 원당동	산50-3	도	496.0	193.0	건설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음6로 11				
52	삼척시 원당동	산50-9	도	587.0	93.0	건설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음6로 11				
53	삼척시 건지동	169	천	45,747.0	427.0	국토해양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음6로 11				
54	삼척시 건지동	108-1	천	19,927.0	1,536.0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5	삼척시 건지동	108-5	제	2,248.0	128.0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56	삼척시 건지동	170	도	3,419.0	77.0	국토해양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음6로 11				
57	삼척시 건지동	108	전	415.0	415.0	삼척시	삼척시 중앙로 296				
58	삼척시 건지동	118-2	전	244.0	244.0	삼척시	삼척시 중앙로 296				
59	삼척시 건지동	117-9	전	293.0	293.0	삼척시	삼척시 중앙로 296				
60	삼척시 건지동	117-13	전	568.0	568.0	삼척시	삼척시 중앙로 296				
61	삼척시 건지동	117-12	전	396.0	396.0	삼척시	삼척시 중앙로 296				
62	삼척시 건지동	111	전	23.0	23.0	삼척시	삼척시 중앙로 296				
63	삼척시 건지동	113	전	166.0	166.0	삼척시	삼척시 중앙로 296				
64	삼척시 건지동	115-1	전	414.0	414.0	삼척시	삼척시 중앙로 296				
65	삼척시 건지동	114	전	200.0	200.0	삼척시	삼척시 중앙로 296				
66	삼척시 건지동	175	도	2,663.0	119.0	삼척시	삼척시 중앙로 296				
67	삼척시 건지동	90-1	전	123.0	18.0	삼척시	삼척시 중앙로 296				
68	삼척시 건지동	115-3	전	50.0	4.0	삼척시	삼척시 중앙로 296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삼척시 건설과(033-570-3488)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6. 지형도면 고시(변경)

- 도로 구역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도: 실을 생략(삼척시청 건설과 비치)
- 삼척 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도: 실을 생략(삼척시청 도시과 비치)

7.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법률명	인·허가사항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실시계획인가	#별첨1(강원도 및 삼척시)
하천법	• 하천점용허가	
농지법	• 농지전용협의	
산지관리법	•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토지보상법	• 사업인정(의제)사업 의견청취	

#별첨1

- 시도 중로1-5호선(건지~자원) 도로(교량) 개설공사 관련 -
「도시 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의제협의서(강원도 및 삼척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제협의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5	20~22	보조간선	2,157	대로 3-6 음중동 2-5도	대로 3-6 자원동 49-6도	일반도로	-	강고 제89-10호 (1989.2.4)	
변경	중로	1	5	20~22	보조간선	2,036	대로 3-6 음중동 2-5	광장 10 자원동 207	일반도로	엑스포광장	강고 제89-10호 (1989.2.4)	
폐지	중로	3	6	9.5	정선도로	94	대로 3-6 자원동 28-2도	중로 1-5 자원동 35-1도	일반도로	삼척중동측	강고 제01-132호 (2001.7.13)	
기정	소로	2	100	8	국지도로	755	중로 1-5 자원동 51-4도	소로 3-138 오사동 17-6제	일반도로	오십천제방도로	강고 제84호 (1981.3.16)	삼척고시 제2010-48호 (2010.7.16)
변경	소로	2	100	8	국지도로	750	광장 10 자원동 51-4	소로 3-138 오사동 17-6	일반도로	오십천제방도로	강원도고시 제84호 (1981.3.16)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중로1-5호선	중로1-5호선	○ 노선축소 - 연장 : 2,157m → 2,036m	· 건지~자원간 도로(교량) 개설사업 시행에 따른 시점부(노선변경) 및 연장 변경
중로3-6호선	-	○ 폐지	· 건지~자원간 도로(교량) 개설사업 시행으로 신설된 교통광장으로 변경되어 시설 폐지
소로 2-100호선	소로 2-100호선	○ 연장변경 - 연장 : 755m → 750m	· 건지~자원간 도로(교량) 개설사업 시행에 따른 신설 접속도로와 연계되도록 기존 시점 부 변경

(2) 광장

1) 광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면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0	자원동	교통광장	자원동 36-1일원	-	증) 10,605	10,605		대로3-6호선과 중복결정(L=224M)

2) 광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0	교통광장	○ 광장신설 - 위치: 자원동 36-1일원 - 면적: 10,605㎡	· 건지~자원 도로(교량) 개설사업에 따른 교차로 설치로 인한 신설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1. 사업시행자의 위치 : 삼척시 자원동 3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로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중로1-5, 자원광장)

나. 명 칭 : 건지~자원 도로(교량) 개설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등급	구 분			기능	연 장 (m)	금회 시행 면적(㎡)	비 고
	류 별	번호	폭원				
중로	1	5	20~22	보조간선도로	전 체 : 2,036 금회시행 : 327.8	6,926	교량 190m
자원광장(대로3-6호선 포함)					교통광장	13,528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삼척시장(건설과장)

나. 주 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2018. 8. 1.

나. 준공예정일 : 2020. 7.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익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위 도로 구역 결정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으로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내역

구분	순번	도로명주소		주소	공시일	사유	도로명공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종전주소	5 건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 91-2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백두대간로 2681-63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백두대간로 2681-63	20180706	건물신축	20090807	자연지형명칭 반영(산맥)	
폐지	2	강원도 삼척시 부황로 91-3 (남양동)	폐지	폐지	20180706	건물철거	20090626	지형지물(부황산)명칭활용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사직동 430-8	강원도 삼척시 사직로 9-4 (사직동)	강원도 삼척시 사직로 9-4 (사직동)	20180706	건물신축	20090626	법정동명칭(사직동)활용	
폐지	4	강원도 삼척시 새천년도로 630-36 (갈전동)	폐지	폐지	20180706	건물철거	20090626	동지역해안도로(기존도로명)	
부여	5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매원리 7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공촌길 455-59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공촌길 455-59	20180706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 사용	

삼척시 공고 제2018-524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계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계서판 및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2018.06.29. ~ 2018.07.13. (15일간)
3. 말소(예정)일자 : 2018.07.14.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남병○
	주소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138-4외 1필지 목조 (1층·51㎡ 단독주택)	
마.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6. 29.

삼 척 시 장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p> <p>삼척시장 귀하</p>		
비 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 <p>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p> <p>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p>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 관리부서
○ 연 락 처 : 033)570-3965

삼척시 공고 제2018-525호

삼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삼척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30일

삼척시장

삼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인원을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노사업무 담당과장으로 위촉하여 노사민정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와의 업무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모범근로자 및 기업, 노동조합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여 노사관계 발전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인원을 30명 이내로 변경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동수 규정 삭제(안 제5조)
- 나.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노사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여 노사관계의 협력 증진 도모(안 제12조)
- 다. 노사민정 활성화와 노동단체 행정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의 위탁 규정 신설(안 제19조)
- 라. 노사화합 및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모범근로자 및 기업, 노동조합에 대한 포상 규정 신설(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의견(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 25914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일자리경제과

○ 전화 : 033-570-3353

○ FAX : 033-570-314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홈페이지(<http://samcheok.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삼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20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를 “노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담당 주무관이 된다”를 “담당으로 한다”로 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노사민정 활성화와 노동단체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제18조에 관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17조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시장은 기업에 근무하면서 노사화합 및 상생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기여한 노동자, 기업, 노동조합을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삼척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관리·정산 및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 ----- -- 30명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③ ----- ----- -----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후단 삭제>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12조(실무협의회) ①·② (생 략)	제12조(실무협의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u>노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u>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④ ----- ----- 담당으로 한다.
<신 설>	제19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노사민정 활성화와 노동단체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제18조에 관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17조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포상) 시장은 기업에 근무하면서 노사화합 및 상생분위기 조성으로

<신 설>

생산성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기여한 노동자, 기업, 노동조합을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삼척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관리·정산 및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삼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 의견제출자 :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18-535호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4일

삼척시장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개관시간 조정이 필요함.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으로 2018. 7. 1.부터 시행
- 나. 작품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운영 등 자문을 위한 비상임 위원회의 위촉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개관시간 조정(안 제7조제1항 개정)

현행	개정안
- 하절기(4. 1.~10. 31.) : 09:00 ~ 21:00 - 동절기(11. 1.~다음해 3. 31.) : 09:00 ~ 18:00	- 절기구분 없이 09:00 ~ 18:00

나. 비상임위원회의 위촉(안 제7조의2 신설)

도계 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작품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비상임위원 위촉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자원개발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제출처 :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자원개발과(우 25914)
 - 연락처 : 삼척시청 자원개발과 시설운영팀 (033-570-4207)
 - F A X : 033- 570-3187

4. 그 밖의 사항

-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의 개관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비상임위원의 위촉) 시장은 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작품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유리공예 및 목공예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개관 및 휴관) ①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의 개관시간은 하절기인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시부터 21시까지, 동절기인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제7조의2 <신설></p>	<p>제7조(개관 및 휴관) ① 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의 개관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의2(비상임위원의 위촉) 시장은 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작품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리공예 및 목공예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규칙 제명 :

☐ 의견제출자 :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14호서식)

삼척시공고 제2018-537호

분할개시결정 공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분할개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서正本이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1. 공고 기간 : 2018.07.06. ~ 2018.07.30.
- 2. 공고 내용 : 공유토지 분할개시 결정

시·군·구	토지 표시				공유토지분할 신청인			동의인 외 인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삼척시		성북동	94-1	대	281	김*남 외1	5*0*1*	삼척시 성북동 9*-*	김 * 남 외 1인
삼척시		정하동	산1-6	임야	5,490	이*욱 외15인	5*0*0*	삼척시 남양길 1*1*, *동 5*3호	이*욱 외 15인

2018년 07월 06일

삼척시 장

297mm×210mm [백상지 80g/㎡]